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4조(이익분배)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제34조(이익분배)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략)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6.~10.(생략) ②~⑩(생략)</p>	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,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 6.~10.(현행과 같음) ②~⑩(현행과 같음)</p>
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